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60호
2024. 3. 15.(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조 례]

제4624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462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제4626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
제4627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4628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462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제4630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제4631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463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4633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4634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16
제463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463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제4637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4638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26
제4639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제4640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6
제464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8
제464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4643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42
제464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4645호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8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0
제4647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제46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54
제464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4650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3
--	----

[훈 령]

제1056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64
-------------------------------------	----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1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3
---	----

자치법규 등**[조 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624호****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근거 법령인 본 조례의 공사 사업범위에는 토지 및 주택 개발 등으로 명시되어 있고 한강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으로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특히, 한강 리버버스 사업의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상 도선사업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사 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함.

◆ 서울특별시조례 제4625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 제1항 각호”를 “법 제5조, 제8조 제1항 제8호”로, “설치하는”을 “표시·설치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등록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개수는 행정동별 2개 이내로 하되,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영 제35조의2에서 정한 장소에는 표시·설치가 제한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4. 1. 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억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옥외광고물등 집행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정법률 제8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정당현수막의 요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제11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4626호**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①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시행규칙 제10조의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서울시 관내 신축 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된 결과 일부 가구에 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서울시 관내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 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 공법 적용을 권고하도록 규정함(제8조의2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627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
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제공 및 향후 예산 확보 명분을 보강하기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에 대한 조례상 지원 근거 신설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628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하는데” 를 “관리하는 데” 로 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여자 또는 관계자에게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작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를 기념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추진을 위한 직무활동의 범위 안에서 상징물을 홍보하려는 경우

제8조제4항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로 한다.

제10조 중 “제7조” 를 “제8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홍보물품의 배부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여 홍보물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브랜드의 홍보와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시 상징물을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물품의 배부기준을 신설함(제7조제3항).
- 나. 기타 문안 및 자구를 수정 또는 현행화함(제1조, 제8조제4항 및 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629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단, 영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10호” 를 “제11호” 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는 제외한다) 또는 자문이 완료되면 회의 결과 및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가 완료되면 입찰참가업체별 전문분야점수,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사유서, 세부 감점내용을 실명으로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을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평가” 를 “제2항에 따른 확인”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위원회 회의록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에 준하여 정비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심의 대상 중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사항에 대해 자치구의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득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제8호)
- 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보관토록 하고, 회의 결과 및 회의록 공개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함.(제9조의2)
- 다.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시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위원회의 사후 평가를 현실성 있게 설계심의 이행 관리를 위한 현장 확인으로 변경함.(제11조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0호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 및 제22조”를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의료기관(법 제19조), 국립·공립 정신병원(법 제21조), 정신요양시설(법 제22조)에서 퇴소하는 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의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퇴소자 지원대상 시설에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퇴소자 지원대상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정신재활시설을 추가로 규정(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1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대두되고, 이상동기 범죄(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구체적 동기 없이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재활시설 등만으로는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과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기능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에 관하여 규정(제8조의2).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2호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1항제1호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를 “서울특별시” 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을 “거주하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임신부 교통비는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음.
- 초저출생 시대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신부 교통비 지원기준에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조건을 삭제함.(제4조의4제1항제1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3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을 “(시민사회·기업과의 협력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를 “성평등을 실현하고 가족을 지원하기”로,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기업”로, “성평등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성평등 기금”을 “성평등 가족 기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촉진하기”를 “실현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개인 또는 법인 등이 성평등 실현 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인 또는 단체가”를 “법인, 단체 또는 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1. 성평등 실현 및 가족 지원 등과 관련된 사업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를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성평등 기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고자 기금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 재원과 용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기금운용심의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 가족 기금운용심의회”로 규정함(제41조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4호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년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중심지역”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 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중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중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립병원
 - 다.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3. “어르신안심주택(이하 “어르신주택”이라 한다)”이란 시장,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으로서 무주택자인 고령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 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
4. “기본용적률”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의 합리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을 말한다.

5. “상한용적률”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제4호에 따른 기본용적률과 합산한 범위에서 정한 용적률을 말한다.

가.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나. 시장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는 경우

6. “공공기여율”이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부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제안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가 순부담으로 공공시설등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비율을 말하고, 공공기여 내용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7. “촉진지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르신주택의 건설·지원 및 매입예산 확보,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구성 등 어르신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제4조(사업시행자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어르신주택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시행자

② 사업시행자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대상지) ① 어르신주택 사업대상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는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주거지역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4. 자연녹지지역

② 사업대상지가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 내외에 걸치는 경우 사업대상지의 과반이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지 규모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제2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 경미한 변경의 범위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④ 사업대상지의 노후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대상지 내 기존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노후건축물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대상지의 구역경계는 가구·획지단위 및 주요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천, 공원 등)의 경계로서 정형화를 원칙으로 하고, 진입도로나 단지 내 도로에 대하여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유형) 어르신주택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촉진지구 지정 대상에서 어르신주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서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사업대상지 기준 350미터 범위 내 주야간 주·정차 및 교통현황
4. 그 밖에 어르신주택의 건설·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어르신주택 사업계획 수립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시장은 어르신주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시장은 어르신주택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등 중 공공주택사업자 이외의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제2항의 촉진지구지정등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 받은 구청장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들은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지정등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② 사업시행자는 제6조의 사업유형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벌칙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르신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어르신주택 사업계획이 취소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3장 어르신주택 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등

제11조(도시·군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이행)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에 적합할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제12조(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 ① 시장은 어르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어르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어르신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4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산업부지 확보비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3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① 사업시행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상업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2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3대/세대

2.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 전용30제곱미터 이하: 0.35대/세대

나. 전용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0.4대/세대

② 시장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어르신주택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 사업(예정)대상지에 대한 어르신주택 사업의 총괄지원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3. 토지주의 사업 대행 및 사업성 분석
4.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5.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6. 어르신주택 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활성화 사업추진 등
7.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8. 임대료·관리비의 부과·징수,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어르신주택의 공급 등

제15조(어르신주택의 건설·공급) 어르신주택 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 건설 규모 및 비율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어르신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양도, 최초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관련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임대료 책정 및 나눔카 도입 방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어르신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업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는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할 수 있다.

② 소득·자산·차량소유 여부 등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어르신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5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어르신주택 건설 등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제출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그 효력을 가진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5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중교통 및 의료시설 중심지역에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여 어르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어르신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 나. 사업대상지 규모에 대한 경미한 변경의 범위 중 “최초 인허가”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최초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최초 건축허가”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제5조제3항).
- 다.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어르신안심주택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를 마련함(제7조)
- 라.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자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제8조부터 제18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5호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관리자는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도로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도로법」(상위법)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우선 적용하도록 개정(2024.1.9.)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관리자가 도로의 보수·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배수성·저소음포장의 적용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그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제15제2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6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제1항”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을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수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제40조의4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를 “「수도법 시행령」 제51조”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를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

제4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8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수조의 설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따라 시장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등 급수설비의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설치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아 저수조의 원활한 위생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상위법(「수도법」 제33조제2항) 개정에 맞춰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의 설치 및 보유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와 위반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저수조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형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제40조의2제1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7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한옥체험업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의한 보조 및 융자금의 최대한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북촌 서촌 등 한옥지역에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한옥지원금 등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등록한옥을 한옥체험업(한옥스테이 포함)으로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임차인 포함)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 및 융자지원 한도액의 10% 이내에서 추가 지원함(제21조제2항제6호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8호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관리·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이하 “테니스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2. 남부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3. 강서도로사업소 테니스장(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

제3조(이용 등) ①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테니스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인정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테니스장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4.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② 테니스장의 일반 시민 개방에 따른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이용 시간 등)

① 테니스장의 사용 시간은 연중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하절기 및 동절기 등 계절별 도로사업소 재난대책 시행, 테니스장 안전관리 상 뚜렷한 위해 발생 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테니스장 이용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1. 주 간 : 09:00 ~ 18:00
2. 야 간 : 18:00 ~ 22:00

② 테니스장 사용료 산정을 위하여 이용 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이용 예정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이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이용 예정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용 시간은 테니스 경기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제5조(이용료) 테니스장의 이용료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수탁자는 제3호 또는 제4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5세 이상인 자,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 100분의 30 감액
3. 시가 주최하는 테니스 경기 : 전액 면제
4. 도로사업소 소속 직원의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 전액 면제

제7조(이용료의 반환) 별표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1.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 전에 이용을 취소하는 때
 - 가. 이용신청을 한 당일 : 전액 반환
 - 나.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시 : 전액 반환
 - 다.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9
 - 라. 이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시 : 납부된 이용료의 10분의7
 - 마. 이용예정일 당일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하지 아니함
2.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테니스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제8조(관리·운영) 시장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테니스장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을 위탁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테니스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 기간을 연장하려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테니스장의 사용을 허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 예약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2.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른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는 시설물과 장비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제9조제4항의 협약에서 정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은 물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테니스장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 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의 모든 사무는 각 도로관리사업소장(동부·남부·강서)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이용료(제5조 관련)

종 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테니스장	1면당, 2시간당	10,000 ~ 40,000	○ 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 야간에는 이용료 30% 가산(토요일·공휴일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FAX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귀하				
※ 구비서류 : 상업사용은 그 사용계획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 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주간 야간	일 일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FAX	
	주 소			
대 리 인	성 명		전화번호	
허가사항	당초허가사항		변경신청사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테니스장 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 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 대 폰)	
	주 소			
허가사항	당초허가사항		변경허가사항	
사용구분				
사용시설명				
경기(행사)명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주간 일, 야간 일)	
허가조건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테니스장 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도로사업소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들이 테니스 운동을 생활체육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 개방에 따른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율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과 공정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 예약시스템 활용 등을 규정함(제3조)
- 나. 테니스장 이용 시 구체적인 이용 시간 및 이용료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사용자를 위한 감면율 등을 규정함(제4조~제7조)
- 다.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제9조~제10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639호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제4호다목 중 “준공인가” 를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택법」 제20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인주시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매입비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잔금1차 지급 시기를 현행준공인가' 에서 '임시사용승인' 까지 포함하도록 조기화하여 건축비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건설사업장의 사업여건 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의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제7조의3)
- 나. 임시사용승인시에도 잔금1차 지급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제7조의3 제4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0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과”를 “시장,”으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의 구매비율을 따른다”를 “제18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경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법령과 맞지 않은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사항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 사항을 삭제함(제4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1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을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조제2항제2호 중 “공간 지원”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
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놀이·돌봄 전용 공간 제공
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
4. 여성·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
5.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
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18조제1항제1호의2 중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 :”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여성창업 활성화를”을 “양육자의 일·돌봄 지원을”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2]

서울가족플라자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기본시설 이용료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공유좌석	10,000원~50,000원(1개월)
	공유부엌	7,500원~30,000원(1시간)

※ 그 밖의 부대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는 원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청구 가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중 ‘스페이스 살림’ 을 ‘서울가족플라자’ 로 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이 시설 설립초기에는 각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의 역할과 여성의 창업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최근에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라는 역할로 크게 변화되어 조례에도 현실에 맞게 기능과 용어를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스페이스살림’이라는 명칭에는 여성창업가를 ‘살리’는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변화된 시설의 성격에 맞게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양육친화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서울가족플라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여성플라자’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 나. ‘스페이스 살림’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 다. 조례에서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함
- 라. 용어 통일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던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하는 부칙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2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제21조 및 제22조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2조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20조로 한다.

제3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을 말한다.

제16조(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받은 친구,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4조) 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5조) 제2항제7호 중 “가족”을 “유족”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 제5항 중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정신건강과장”으로, “정신보건팀장”을 “자살예방사업 관련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 제2항 중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 제1항 중 “수집하여”를 “수집하고”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의2) 전단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1조) 제1항제6호 중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등”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을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자살시도자”로,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를 “완화되도록”으로, “실시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단기”를 “단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서지원프로그램
3. 상담 및 치료
4. 자조모임 운영
5. 그 밖에 자살시도자들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와 자살자의 유가족 등은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우선 ‘자조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자살 사망자의 유족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가깝거나 일상생활을 함께했던 친구, 동료 등 지인까지도 자조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들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제3조)
- 나. 자살시도자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자조모임 운영’을 추가함(제15조제1항제4호)
- 다.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을 신설함(제16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3호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형기숙사 건설·공급을 지원하여 다양한 세대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형기숙사”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2. “임대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2)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간선도로변”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 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의료시설 중심지역”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4. “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며,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5.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설·공급하기 위하여 제2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유공간”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숙사 건축기준」(이하 “기숙사 건축기준”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유공간으로서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지원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

제5조(사업대상지) ① 임대형기숙사의 건설·공급을 위해 민간이 제안가능한 사업대상지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대상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 단,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한다.

2. 준공업지역

3.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

②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정책상 보전 및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

2. 양호한 저층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 문화, 옛 정취 보전 등 입지 특성화 지역 등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 완료된 지역 등

제6조(사업유형) 임대형기숙사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제출) ①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에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인·허가 관련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허가권자(제6조제1호에 따른 건축의 허가권자 또는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촉진지구에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제안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관련 서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
 3. 그 밖에 임대형기숙사의 건설·공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유공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에 따른 입주 수요 및 특성
 2.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공간의 배치,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④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결정절차) ①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2.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촉진지구지정등”이라 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유공간 계획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
- 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촉진지구지정등을 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임대형기숙사의 공급·관리 등

- 제9조(임차인 자격 등) ①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최초 임대료(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 임대료 상승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다.
-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 시 허가권자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은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청년안심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으며, 제7

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1. 100실 이상: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2. 300실 이상: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제11조(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임대형기숙사의 원활한 건설·공급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임대형기숙사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예정) 대상지에 대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총괄 지원
2.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
3.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4. 임대료·관리비 산정 및 부과·징수,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지원
5.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모집·선정 및 명도·퇴거 지원
6.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7.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 주택,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
8.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투자유치, 자금 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기준 등) 시장은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공공기여율,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과 노년층까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하여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으로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운영 임대형기숙사 공급을 지원하여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임대형기숙사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등의 범위 및 면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
- 나. 사업대상지,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절차, 공유공간계획 및 심의,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다.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산정 절차, 임대형기숙사의 단일 관리운영체계 마련을 위한 주택 임대관리업 등록 및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운영기준 근거를 마련함(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4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
다.

제5조의2제6항 중 “편익시설 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에게”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은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2항 및 제3호 신설)
- 나. 시장은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를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
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5호**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피해자 지원”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으로, “원자폭탄 피해자의”를 “이들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폭탄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원폭피해자”를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원폭피해자”를 “원폭피해자등”으로, “수립하여”를 “수립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원폭피해자”를 “원폭피해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원폭피해자”를 “원자폭탄 피해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원폭피해자”를 “원폭피해자등”으로 한다.

4.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제5조의 제목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원폭피해자”를 각각 “원폭피해자등”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수당 지원) 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6조(중전의 제10조)의 제목 “(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을 “(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원폭피해자가” 를 “원폭피해자등이” 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11조)제1항 중 “원폭피해자는” 을 “원폭피해자등은” 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원폭피해자” 를 “원폭피해자등” 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원폭피해자” 를 “원폭피해자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립에” 를 “수립” 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 중 “원자폭탄피해자” 를 “원폭피해자등”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생활지원수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정의하여,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없애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자폭탄 피해자’ 와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 의 정의를 명확히 함(제2조)
- 나.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난임부부”를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난임부부의 난임”을 “난임, 유산·사산부부의”로, “난임극복”을 “극복”으로 한다.

제4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제5조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한다.

제6조 중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 정책”으로, “난임 원”을 “난임, 유산·사산 원”으로, “난임극복 지원에”를 “난임, 유산·사산극복 지원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부부”를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제11조 중 “난임극복”을 “난임, 유산·사산극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5만8천417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모성사망·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천205명으로 나타남.
- 이에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시장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과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시장이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7조제2항 신설).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7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등) ① 시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행사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중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은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운영·관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을 위한 근거 마련(제5조의3).

나. 행사폐기물 감량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제8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8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하되,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이고 다음”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
2.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
- 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학교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공공공지 간의 변경

제26조제1항 후단 중 “대책에”를 “대책(통학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4항) 본문 중 “50”을 “7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가 필요한 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나.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 제5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특별시도 중 20미터 이상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 영 제5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이하 이 조에서 “추가용적률”이라 한다) 중 법적상한용적률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50

2. 법 제6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 해당하는 면적: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율로 구성한다.

1. 제4항제1호: 국민주택규모 주택 전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2. 제4항제2호: 별표 5와 같다. 단,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⑥ 영 제55조제5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 이상을 말한다.
- ⑧ 영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 ⑩ 영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추진중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제3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 공람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별표 5]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

(제3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관련)

1. 추가용적률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및 이에 따른 공공분양주택 건설비율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 국민주택규모 주택 비율 60% 이상 70% 이하 범위 내에서 아래 표에서 제시하지 않은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근사한 값을 적용한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는 구간) 국민주택규모 주택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비율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임대주택 비율
60%	60분의 30	60분의 30
61%	61분의 33.5	61분의 27.5
62%	62분의 37	62분의 25
63%	63분의 40.5	63분의 22.5
64%	64분의 44	64분의 20
65%	65분의 47.5	65분의 17.5
66%	66분의 51	66분의 15
67%	67분의 54.5	67분의 12.5
68%	68분의 58	68분의 10
69%	69분의 61.5	69분의 7.5
70%	70분의 65	70분의 5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규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특정무허가건축물은 호수밀도 산정 시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정비구역 추진 가능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등이 도입됨에 따라 주민이 구역계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 할 수 있게 되바,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역세권 등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역세권 등의 범위, 공공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시·도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상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에 ‘통학로’를 명시함으로써 학교주변 통학로의 안전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의무임대주택 인수 시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매입비의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사업 여건 개선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호수밀도 산정에 특정무허가건축물이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2조).
- 나. 재개발사업에서의 노후도 요건을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함(제6조제1항제2호)
- 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제9조의2 신설)
- 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변경을 추가함(제11조제1항제10호 신설, 제2항제6호)

- 마. 역세권 등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의 공급비율을 각각 규정하고, 역세권 등의 범위를 정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함(제3조제2항 신설, 제3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별표 5 신설, 부칙 제2조 신설).
- 바. 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를 제출할 때 통학로를 포함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명시함(제26조제1항)
- 사. 임대주택 인수대금 지급 시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제42조제6항).

◆ 서울특별시조례 제4649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별표 1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3,513.90㎡/106인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의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공간	c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무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원 수×2.5㎡	
			기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원 수×2㎡	
			직원 수×2㎡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직실	2인실기준 15㎡	
		화장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바복도계단	(a + b + c) × 30~40%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23. 8. 22.)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제33조, 제90조)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제45조 관련 별표1)
- 다. 시의회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령상 의무시설에 대한 면적 배정 근거를 명시함(별표 1 제2호).

◆ 서울특별시조례 제4650호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때에는(부위원장)”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때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운영이 종료('23. 8. 31.)됨에 따라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기능, 운영비 지원 및 정산, 지도·점검 등 규정 삭제(제21조~제24조)
- 나. 문구 등 수정(제10조, 제13조)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56호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설치)” 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국외훈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국외훈련 공무원” 을 “훈련대상자”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 국외훈련 운영규정」” 을 “이 규정”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밖의” 를 “밖에”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훈련대상자” 를 “훈련대상자” 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1부시장” 을 각각 “행정(1)부시장”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개최하여 운영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를 “개최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훈련공무원의 선발 및 훈련관리” 를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관리” 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요건)” 을 “(훈련대상자의 선발 요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훈련 공무원은” 을 “훈련대상자는” 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훈련 대상자” 를 “훈련대상자” 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훈련공무원에게” 를 “선발된 훈련대상자에게”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훈련공무원은” 을 “선발된 훈련대상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소속 훈련공무원이” 를 “훈련대상자가” 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를 “예산의 범위” 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달성 할” 을 “달성할” 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를 “영 제30조” 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를 “선발된 훈련대상자” 로, “자가” 를 “자의” 로, “확정될 때에는” 을 “확정된 때에는”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훈련공무원에 대한 관리)” 를 “(훈련 중인 자에 대한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훈련공무원” 을 “훈련 중인 자” 로, “관하여” 를 “대한” 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무원” 을 “중인 자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관부서의장 또는 훈련과제 관리책임관은 훈련공무원에게 훈련 중 연구과제를 부여하여야 하며, 훈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을 “훈련 중인 자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자의” 를 “훈련 중인 자의” 로, “훈련자를” 을 “훈련 중인 자를”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훈련공무원에게” 를 “훈련 중인 자에게” 로, “훈련공무원이” 를 “훈련 중인 자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한다.

제19조제6항 전단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제1항” 을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를 “같은 조례” 로,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관한” 을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 를 “범위” 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훈련 주관기관의 장” 을 “주관 부서의장”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관부서의장은 훈련이수자가 제출한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에 대해 유사도(표절 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훈련성과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의 제목 “훈련공무원의 준수사항” 을 “훈련 중인 자의 준수사항” 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훈련공무원의” 를 “훈련 중인 자의” 로, “위해 훈련공무원에게” 를 “위해”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지도·감독사항” 을 “지도·감독에 따른 지시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 를 “훈련수행”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훈련 중인 자 또는 훈련이수자는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지 않는 등 훈련목적에 맞게 훈련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단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훈련공무원은” 을 “훈련 중인 자는”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공무원이” 를 “훈련 중인 자가” 로, “각 호” 를 “각 호 어느 하나”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책임관” 을 “관리책임관” 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때” 를 각각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훈련공무원” 을 “훈련 중인 자” 로 한다.

제28조 전단 중 “시비로” 를 “시 예산으로”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요되고 그 내역” 을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비용으로써, 지출내역” 으로, “부담금 등에 상당하는 비용과 그 밖의 훈련에 직접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명확한” 을 “부담금,” 으로, “포함한다” 를 “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판단” 을 “판단하여 지급한도액을 정”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훈련공무원” 을 “선발된 훈련대상자”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공무원이” 를 “선발된 훈련대상자가” 로, “호적등본” 을 “가족관계증명서”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훈련공무원과” 를 “훈련 중인 자와”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훈련공무원” 을 “훈련 중인 자” 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 중 “훈련공무원의 파견” 을 “파견” 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훈련공무원의” 를 “다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3조” 를 “제32조” 로 한다.

① 선발된 훈련대상자에 대한 항공료는 별표 3의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제31조 중 “지급 한다” 를 “지급한다” 로 한다.

제32조 중 “훈련공무원이 훈련 중” 을 “훈련 중인 자가” 로, “훈련공무원 및 동반가족의 항공료” 를 “항공료(동반가족 포함)” 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41조” 를 “제39조” 로 한다.

제34조 중 “훈련주관부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 를 “주관부서의장은 예산의 범위” 로 한다.

제35조제1항 전단 중 “일할계산 하여” 를 “일할계산하여”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체제비” 를 각각 “체제비”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훈련공무원이” 를 “훈련 중인 자가” 로, “50%, 조교활동” 을 “50%, 조교활동” 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환수 할” 을 “환수할” 로 한다.

제7장의 제목 “훈련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훈련이수자의 인사관리”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4조”를 “훈련이수자는 영 제34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38조제1항”을 “제3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8조제1항”을 “영 제34조제1항”으로,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란”을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란”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훈련공무원이 영 제33조 각 호의”를 “훈련이수자가 영 제35조제1항 각 호”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를 “법과”로, “전액”을 “전부”로,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케”를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는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반납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향의”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대보증인”을 “보증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국외훈련공무원이”를 “훈련이수자가”로, “지득한”을 “알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향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훈련 이수자”를 “훈련이수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무 복무한 기간”을 “의무복무를 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를 “법에”로, “기간은”을 “경우는”으로 한다.

③ 훈련이수자가 시에 복귀할 시점에 결원이 없어 훈련이수자 또는 차기 훈련대상자의 무보직 상태가 예견되는 경우, 가급적 훈련이수자를 우선 보직하고 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까지 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량이 많은 본청 부서의 업무 지원 및 교육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를 “법 제19조”로, “의무복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해외유학)”를 “자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무복무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의무복무”를 “의무복무기간”으로, “국외훈련이수공무원이”를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무”를 “제37조의”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수혜(「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9조”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로, “금액)를”을 “금액)을”로, “시비”를 “시 예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후”를 “의무복무기간이 경과한 훈련이수자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훈련성과”를 “시장은 훈련성과”로, “승인한다”를 “승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파견기간”을 “훈련 중인 자가 파견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훈련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만 파견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 22.1.13.) 반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운영지침」 개정사항(' 23.2.15.) 반영
-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11조(정책 등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의 개정에 따른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
- 국외훈련 어학요건 및 관련법명 현행화

2. 주요내용

- 훈련성과보고서(학위논문 등) 유사도 검사 실시 및 수정 요구(제21조)
- 훈련성과보고서 작성 시 타인의 지적재산 무단 도용 등 금지(제24조)
- 용어정비(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외훈련 어학요건 현행화
 - － “호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폐지 어학시험(TEPS) 삭제 및 어학시험(제2외국어 포함) 현행화
 - － (변경전)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 (변경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 － (변경전) 행정안전부장관 → (변경후) 시장

[별표 1]

어 학 요 건

(제10조제2항 관련)

훈 련 종 류		어 학 성 적
장기 훈련 (6월 이상)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IELTS 5.5점, G-Telp (Level 2) 70점, TOEIC 700점, NEW TEPS 32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 HSK 5급 180점 이상 ·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단기 훈련 (6월 미만)	영어권	TOEFL IBT 75점, 서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IELTS 5점, G-Telp (Level 2) 60점, TOEIC 590점, NEW TEPS 297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 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55점 이상

[별표 3]

국외훈련비 지급 기준

(제28조 관련)

1. 항 공 료 : 국외훈련을 받는 공무원과 시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 등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왕복항공료
2. 체 재 비
 - 가. 5급 이하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과 같음
 - 나. 4급
 - 일반훈련(대학원 학위과정 등)

구 분	지 급 기 준
가 산 비 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10% 가산

- 직무훈련

구 분		지 급 기 준
체 재 비 가산비율	국제기구,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등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의 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70% 가산
	독립전문연구기관, 유명대학 부설연구소, 소속단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기업, 법무법인 등에서 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50% 가산지급
직무훈련 보조비		월 300 미합중국달러

다. 3급 이상

구 분	지 급 기 준
체재비가산비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서 정한 체재비의 75% 가산
직무훈련보조비	월 500 미합중국달러

3. 의료보험료(의료보조비) : 예산의 범위안에서 혼련국 소재 재외공관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의료 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에 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
4. 생활준비금 : 500미합중국달러
5. 귀국이전비 : 아시아지역 300미합중국달러, 그 밖의 지역 600미합중국달러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11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 나.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폐장에 따른 명칭 및 주소 삭제
- 다.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및 업무 명칭 현행화
- 라. 기타 상위법령 근거 명확화와 근거 조항 폐지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규정 및 관용적 표현을 쉽고 간결한 용어로 수정

2. 주요내용

- 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한시기구 설치·운영)를 동 조례의 목적 조항에 근거 규정으로 반영함(안 제1조 개정)
- 나.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를 “과·담당관”으로 수정(안 제2조 개정)
- 다.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해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기존 교육행정국 소속 한시기구인 청사이전추진단을 신설된 한시기구의 설치 조항에 반영함(안 제2조의2 신설)
- 라. 학생교육원 야외교육장 명칭 및 주소 삭제(안 제20조 및 [별표 2])
- 마. 교육시설관리본부 소재지 및 업무 명칭 현행화를 위한 정비(안 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2호 개정)
- 바.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함(부칙)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10층 행정관리담당관 (우 03178)

○ 이메일: bmw7289@sen.go.kr (※ 문의: 전화 02-2282-8643)

4.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2조(본청) 중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 를 “과·담당관” 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행정국에 청사이전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중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을 “제20조(분원)” 으로, “분원 및 야외교육장” 을 “분원” 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종암로 196 (하월곡동)” 을 “오패산로3길 105(하월곡동)” 으로 한다.

제41조제2호 중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 를 “시설관리 용역 지원” 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86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를 “제2조의2제2항의 청사이전추진단의”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2조의2제1항의 유보통합추진단의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의 명칭 · 위치(안 제20조 관련)

구분	분원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흥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① ----- ----- <u>제30조부터 제34조까지</u> ----- <u>지</u> ----- ----- <u>제7조부터 제8조까지</u> ----- ----- <u>따라</u> ----- ----- -----.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본청) ----- ----- <u>과·담당관</u> ----- ----- -----.
<신 설>	제2조의2(한시기구의 설치 등) ① 부교육감 밑에 유보통합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교육행정국에 청사이전추진단을 두며,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학생교육원에 두는 <u>분원 및 야외교육장</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u>분원</u>) ----- <u>분원</u> ----- -----.
제39조(설치) ① (생략)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u>중암로 196 (하월곡동)</u> 에 둔다.	제39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u>오</u> <u>폐산로3길 105(하월곡동)</u> -----.
제40조(본부장) (생략)	제40조(본부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1조(업무) (생략) 1. (생략) 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민간위탁 시설·용역 관리 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부칙 <조례 제8692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41조(업무)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시설관리 용역 지원 ----- 3. ~ 5. (현행과 같음) 부칙 <조례 제8692호>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한시기구) 제2조의2제2항의 청사 이전추진단의 ----- -----.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및 야외교육장 의 명칭·위치(안 제20조 관련)	[별표 2]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분원 의 명칭·위치(안 제20조 관련)																													
<table><tr><th>구분</th><th>분원 및 야외교육장 명</th><th>소재지</th></tr><tr><td rowspan="4">분원</td><td>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td><td>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td></tr><tr><td>대성리교육원</td><td>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td></tr><tr><td>대천임해교육원</td><td>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혹동)</td></tr><tr><td>퇴촌야영교육원</td><td>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td></tr><tr><td rowspan="2">야외교육장</td><td>천마산야영교육장</td><td>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td></tr><tr><td>영월야영교육장</td><td>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관운라 304</td></tr></table>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 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혹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	영월야영교육장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관운라 304	<table><tr><th>구분</th><th>분원명</th><th>소재지</th></tr><tr><td rowspan="4">분원</td><td>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td><td>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td></tr><tr><td>대성리교육원</td><td>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td></tr><tr><td>대천임해교육원</td><td>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혹동)</td></tr><tr><td>퇴촌야영교육원</td><td>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td></tr></table>	구분	분원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혹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구분	분원 및 야외교육장 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혹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야외교육장	천마산야영교육장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산14																												
	영월야영교육장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관운라 304																												
구분	분원명	소재지																												
분원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불기산길 88																												
	대성리교육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모꼬지로 61																												
	대천임해교육원	충청남도 보령시 해수욕장3길 26 (신혹동)																												
	퇴촌야영교육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1152-51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